

2014. 10. 23

지방회계제도 개선 및 사례연구



안전행정부

목 차

I 회계분야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내용

II 자치단체 통합지출관제도 운영계획

III 사례연구

I 회계분야 지방재정법 재정 주요내용

1. 출납폐쇄기한 관련

■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제8조)

- (적용) 2015회계연도
- (출납폐쇄기한) 익년도 2월말 → 회계연도 말(12월말)
- (출납정리기한)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
- (출납사무)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까지 마쳐야 함.

1. 출납폐쇄기한 관련

■ 결산순기 비교표

구 분		출납폐쇄 (법8조)	출납정리	세입·세출 사무완결	결산안작성 (자치법 134조)	결산검사 완료 (조례)	결산서 제출 (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 자 체	개정 전	다음연도 2월 말	익년도 3.10일 (재정법시행령 제 4조)	익년도 3월 말 (시행령 제5 조)	익년도 5.19일	익년도 6.20일	익년도 6월말
	개정 후	당해 연도 12월말	다음연도 1.20 (일상경비 1.15) (법 제8조)	익년도 2월 10일 (법 제8조)	익년도 3.20	익년도 4.20	익년도 4.30
국 가		당해 연도 12월말			4월 9일까지		5월 31일

- 결산서 제출일을 현재보다 50일 앞당겨 지방결산 통계 작성시점 단축

2. 지방의회 심의 강화를 위한 첨부서류 추가

■ 예산안의 첨부서류(법 제44조의2)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 계속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성과계획서 등 추가

* 재정지표, 통합부채, 우발부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감사결과, 교부세 감액사항 등

※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다만 성과계획서는 2016회계연도 적용

■ 결산서의 첨부서류(법 제51조의2)

-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이월명세서 및 명시 이월비,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보조금반납명세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등

※ 보조금반납명세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등

3. 통합결산서 작성체계 마련(제51조)

■ 결산서류 7종 → 3종으로 통합, 성과보고서 추가

❖ 현행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보고서
(재무결산) 재무보고서

❖ 개선

- ① 결산개요
- ② 세입세출결산서(기존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보고서)
- ③ 재무제표(기존의 재무보고서)
- ④ 예산 성과보고서(신규)

4. 회계기준 및 재정의 통합지출

■ 지방회계기준과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제53조)

-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처리
- 지방회계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지방회계심의위원회 설치(제53조의3)

-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 회계전문가, 공인회계사, 4대 협의체 추천, 교수, 중앙부서 전문가 등

■ 지역통합통계의 작성(제59조, 2015회계연도)

- 지방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을 통합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제도를 도입함

4. 회계기준 및 재정의 통합지출

■ 재정의 통합지출(제90조)

-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
-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함.

■ 도급경비제도 폐지 : 2015. 1. 1부터 시행

II 통합지출관제도 운용계획

1. 통합지출관 개요

■ 목적

- 자치단체의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운영(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임무

-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재정의 통합운용과 통합지출관 관직을 의무적으로 규정(법 90조)

개정 전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후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통합지출관의 임무 정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4조)

개정전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2.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 의뢰한 자금에 대한 통합 계좌이체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후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지정(재무회계규칙 제3조)

개정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본청
〈신설〉

개정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본청
·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3. 그간 추진경과

■ 통합지출관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수행

- ❖ (용역기간) 2014. 4.16~7.1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의견수렴) 통합지출관 도입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 의견수렴(총 6회)

■ 금고(은행) 관계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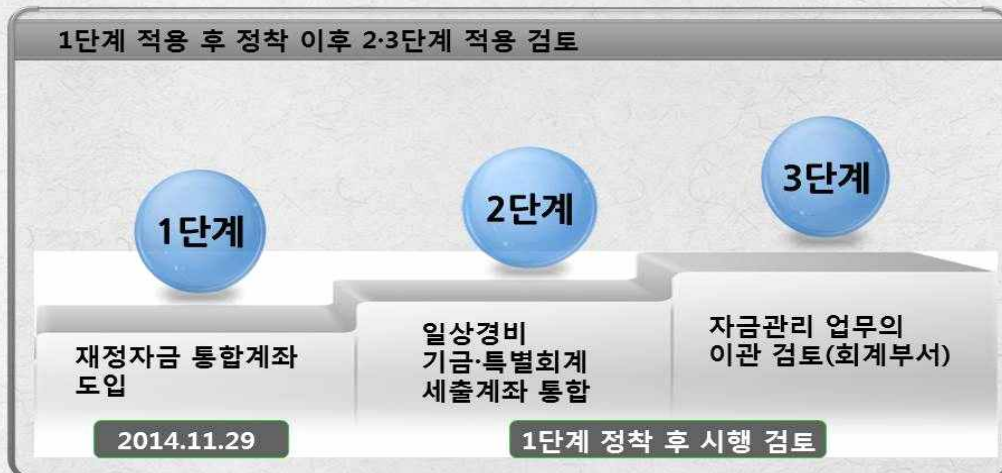
- ❖ (회의) 총 4회 의견 수렴(7.15(화), 8.12(화), 8.22(금), 8.27(화))
- ❖ (추진방안) 관서별 세출계좌 통합방안 적용

■ 17개 시도 회계업무담당과장 회의 및 시범기관 선정

- ❖ (추진방안) 통합지출관 의 단계별 추진(1단계 적용)
- ❖ (시범기관) 14개 자치단체
 - 광역(5)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 기초(9) 부산 동구, 인천 중구, 경기 평택시, 하남시, 군포시, 과천시, 양평군, 전주시, 포항시

4. 통합지출관제도 단계별 추진방안

■ 업무혼란 방지를 위한 단계별 추진



4-1. 1단계 추진방안

■ 일반회계 관서별 세출계좌 통합

- 대상 :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 다만, 수기(고지서, 현금 등)지출을 고려, 기존의 관서별 계좌 존치
- 관서별 일상경비 계좌는 존치하되, 향후 통합방안 검토

■ 지출절차

- 관서별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지출자금 이체와 동시에 채주에게 지급
- 관서별 지출원의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와 관서별 계좌가 연동되도록 하여 관서별 계좌의 자금은 "0"원이 되도록 노력

※ 세정부서의 공공예금계좌를 통합계좌로 활용

4-2. 자금배정 및 지급명령 전/후 비교

■ 관서/ 읍·면·동 자금배정 업무

현행	개선
- 자금배정 시 관서계좌로 배정액 이체	- 자금배정은 e호조상 지 출한도액만 설정
	- 지출원의 e-Banking 승인과 동시에 자금배정
※ 본청 : 전·후 차이 없으나, 본청 지출원 계좌를 폐지하고 공공예금계좌로 통합	

4-2. 자금배정 및 지급명령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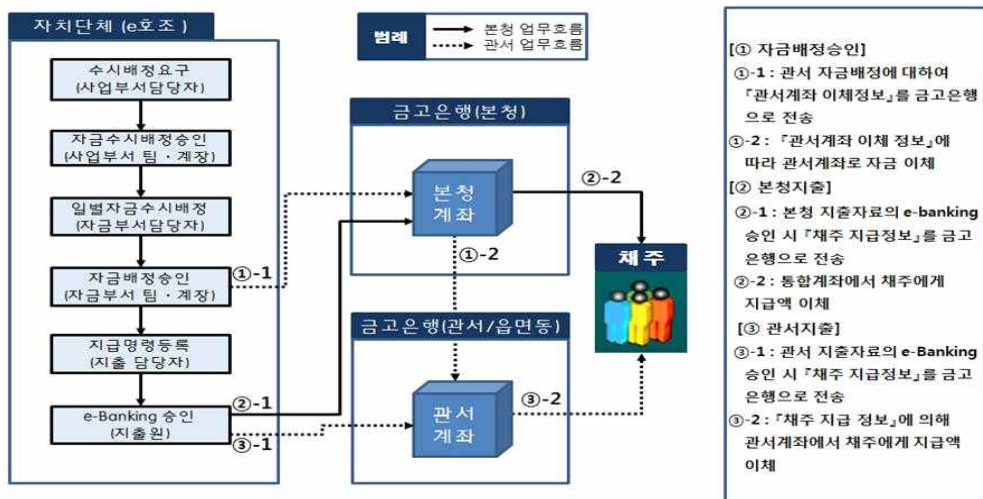
관서/ 읍·면·동 지급명령 업무

현행	개선
- e뱅킹 승인 시 은행으로 관서계좌에서 채주로 이체명령 전송	- 본청 통합계좌에서 관서계좌로 자금배정 정보를 전송하고, 해당 자금 이체 확인 후 채주에게 이체명령 전송

※ 본청 : 전·후 차이 없으나, 통합계좌에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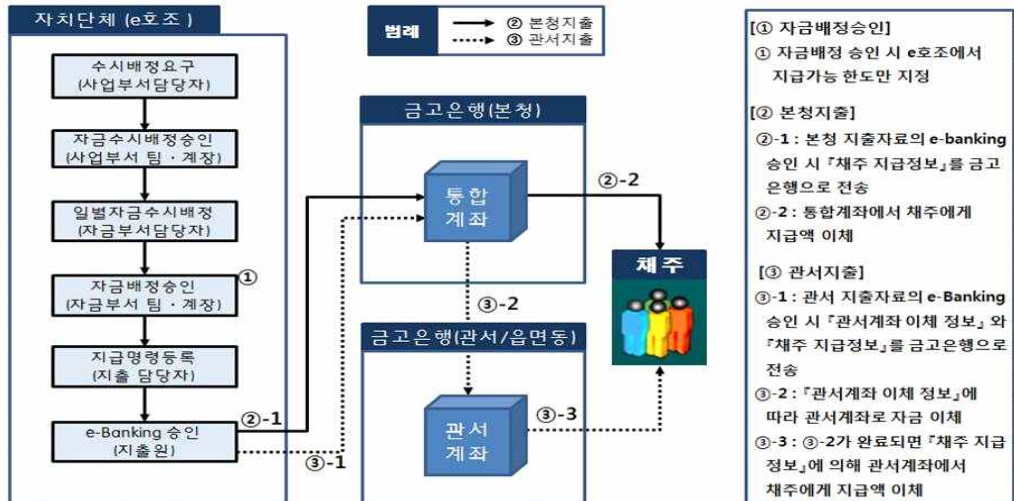
4-2. 자금배정 및 지급명령 전/후 비교

현재 지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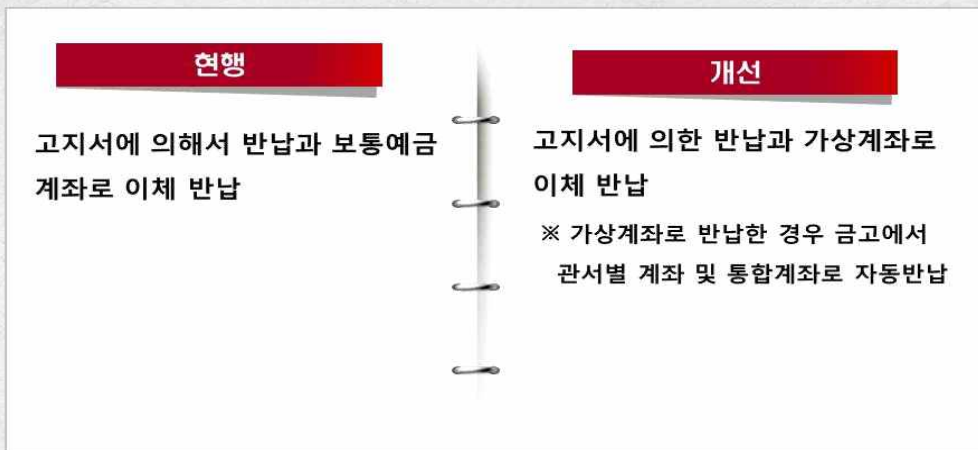
4-2. 자금배정 및 지급명령 전/후 비교

통합계좌 적용 후 지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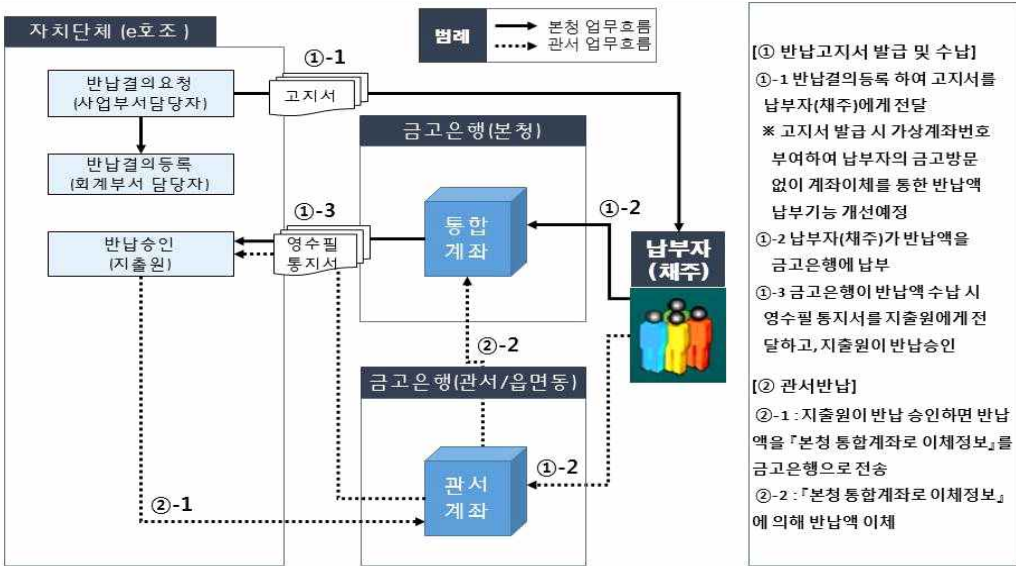


5. 기타(반납절차)

가상계좌를 활용한 반납처리



5. 기타(반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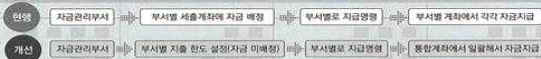


안전행정부 20

서울신문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25면 공공정책

통합지출관리제도 업무 흐름



(세출예산 집행용)

1 지자체, 1 계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던 세출예산 집행을 은행계좌들이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평균 30개 가까이 부서별 은행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출예산 계좌가 통합되면 지자체 전체 자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정운용이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전주시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제정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존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해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이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등 암암적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제하도록 했고 통합지출관 임명을 의무화함으로써 바꿨다.

새달 말부터 계좌 통합의 무와 통합지출관 임명해 관리해야

복지 공무원 행정 근원 효과 전국 151억 이자수익도 기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지출관은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한다. 통합지출관은 관서별 소요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관서별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도 감독하며, 기타 자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됐다. 결산서 작성도 통합지출관 일무다.

이번 개혁은 2010년 서울에서 시작한 통합지출관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개혁 모델을 연세대학교 전국에 확산시키는 중앙-지방 협력 사례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0년 1466개나 되던 계좌를 회계별 계좌 32개로 통합했고, 2012년에는 통합계좌 하나에 모든 자금을 통합했다. 부서에서 운영하던 계좌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수지관리만 한다.

연세대는 먼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계좌를 통합하고, 그다음으로는 일상경비와 기금·특별회계까지도 본청에서 통합계좌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

강권진 기자 jkjin@seoul.co.kr

통합지출관 관련 언론 보도

[2014. 10. 17 현재]

언론사	계	박
서울신문	1지자체, 1계좌	
매일경제	자치단체 '돈주머니' 한 계좌로 합친다	
연합뉴스	자치단체 '돈주머니' 한 계좌로 합친다	
중앙일보	자치단체 '돈주머니' 한 계좌로 합친다	
세일경제	지자체 지출계좌 통합화 논의가 온양	
아시아투데이	지자체 지출계좌 하나로 통합	
이데일리	내일부터 지자체 지출계좌 하나로 통합된다	
간이일보	지자체 지출계좌 하나로 통합된다	
경북도민일보	지자체 지출계좌 하나로 통합된다	
공북매일신문	지자체 지출계좌 29일부터 통합계좌 하나로 통합	

무등일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자치단체 '돈주머니' 한 계좌로

통합지출관이 관리... 다음달 29일부터 시행

자치단체 한 곳 당 많게는 100개가 넘는 지출계좌가 하나로 통합되고, 자치단체 '통합지출관'이 이를 관리한다.

연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다음 달 29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기관별로 분산 운영하던 지출계좌가 본청 통합계좌로 합쳐진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본청 회계과가 소속 사업소나 동사무소 등 각 관서의 계좌로 자금을 배정하고, 각 관서는 자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집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관서가 본청의 통합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을 인출하게 된다.

또 각 자치단체는 통합계좌를 관리·운영하는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회계과정 또는 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을 겸직하게 된다.

지출 계좌가 하나로 통합되면 자치단체는 전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기관의 집행 상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줄어든다.

또 수십 개 계좌에 분산된 자금이 한 계좌로 통합되는 데 따라 이자수익이 연간 총 15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행부는 1단계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통합계좌를 운영한 뒤 특별회계와 일상경비 계좌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계좌 및 통합지출관 제도는 17일부터 14개 시도에서 먼저 시행운영되고 다음 달 29일부터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한>

III 사례연구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I 일반운영비

Q&A

Q : 퇴임 이·통장 감사패 집행 예산과목은

A :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

Q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여부

A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 불가

※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지급 불가

Q 인터넷, 유선방송료의 집행과목은?

A 사무관리비(201-01)로 지급 타당

※ 인터넷, 유선방송료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수용비 중 일반 수수료로 보아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없음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I 일반운영비

Q&A

Q 행사운영비(201-03)로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A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식비 지원 가능 (단가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

※ 행사에 참여한 자의 범위에는 지역축제 등을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배제

Q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워크숍, 연찬회)를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A 공무원 대상 기관 또는 부서단위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I 여비

Q&A

Q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로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 민간인 국외여부(301-07)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함

I 업무추진비

Q&A

Q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할 경우 예산과목은

A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6호 아목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 지급 가능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 업무추진비

Q&A

Q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집행시 기관장 본인도 직원에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A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기관장이 관련 법령·조례 등의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집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Q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장에 축·부의금 지급 가능 여부

A 이·통장 및 자생단체는 유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 지급 불가

※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 업무추진비

Q&A

Q 특정업무수행경비(204-03) 집행과 관련하여 질병 휴직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발령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Q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지급 관련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국장을 겸임하는 경우 중복지급 가능 여부

A 자치행정국장 직위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

(예시 : A 국장이 공석인 경우 B주무과장이 겸직하는 경우 하나의 직책급 지급

C 과장 공석, B과장이 겸직발령 받은 경우 2개 부서 과장의 직책급 지급 가능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Ⅰ 의회비

Q&A

Q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장교통비로 충전식 교통카드와 핸드폰 정액 요금 지원 가능 여부?

A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교통카드와 핸드폰 요금 지원은 불가

Q 실제로 다음연도에 이루어지는 지방의원 국외활동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으로 원인행위 후 출납폐쇄기간 만료(이듬해 2월)까지 국외여비 집행할 수 있는지?

A 집행불가

※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제 국외활동이 이루어 지는 당해 연도 집행하여야 함.

1.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사례연구

Ⅰ 행사실비보상금(301-09)

Q&A

Q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비 지급 가능 여부와 차량 임차료 지급 가능 여부

A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는 실비지급 원칙(예산편성 운영기준)
차량임차료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

Ⅰ 민간자본보조(402-01)

Q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와 달리 사업변경에 의하여 자비 부담률이 30%를 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 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변경교부 결정을 하여 자부담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변경된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함.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 기관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기준

- ❖ 기관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 소속 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에 한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

지적사항

- ◆ 00 읍장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이장, 해병전우회장,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총 7건 400,000원을 부정하게 지출
- ◆ 0000소 00과에서는 2012.11.30. 00과 소속 직원 김00의 자녀 돌잔치 축의금 50,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실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 기관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기준

-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

지적사항

- ◆ 000과에서는 2010.7.22 지출한 000 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50,000원은 000국의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이00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당해 의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
- ◆ 00신문 000 기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 50,000원 집행, 00 신문은 동 규정에 근거한 관내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집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한 사실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Ⅰ 기관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기준

-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결혼 또는 사망 시 집행 수 있으며,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고,
- ❖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면·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 집행 가능

지적사항

- ◆ 000시에서 2011.1.13.부터 2013.6.8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000국의 소속 지원도 아니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前00과장 000 사망부의금, 前000 000의 자녀결혼 축의금, 前 00도청 소속지원 000 자녀 결혼 축의금 등 총 7,400천원을 목적 외 집행한 사실
- ◆ 00 시에서는 2010.1.11부터 2011.12.29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이 아닌 前 00000협의회장 김00 모친사망, 이00 자녀 돌 등에 총 3,330천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사실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Ⅰ 기관업무추진비 화환·화분 제공 부적정

기준

- ❖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및 전출입하는 경우
※ 유관기관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에 한정
- ❖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지적사항

- ◆ 00과에서는 2010.7.18.에 유관기관장 전출입시 의례적 화환·화분 구입비로 340,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대상과 인원, 얼마짜리 화환을 보냈는지 알 수 없게 집행
- ◆ 2010.12.16.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청사이전 관련 화환 구입비를 시책추진비로 집행하고 의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인 180,000원의 화분을 집행
- ◆ 0000소에서는 집행대상이 아닌 상공회의소장, 체육회 전무, 자원봉사센터장, 그린농협대학 동문회장 이·취임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총 5건 480,000원 집행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Ⅰ 업무추진비 휴일, 관외, 자택근처 등 사용 부적정

기준

- ❖ 업무추진비는 심야,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지적사항

- ◆ 00동에서는 일요일 2010.3.28. 00:22 00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87,000원을 사용, 2010.4.10 22:37 00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산불비상근무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248,000원을 사용하는 등 852,000원을 휴일 자정을 전후하여 집행한 사실
- ◆ 00읍에서 휴일인 2012.2.18(토) 시책홍보 간담회 목적으로 사용한 161,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객관적 증빙자료 미 구비 등

2. 업무추진비 감사지적 사례

Ⅰ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준

-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단순히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고, 집행대상 및 인원, 목적, 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양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지적사항

- ◆ 0000과에서는 2011.11.09 수원시로 출장(과장, 사업팀장)시 시책추진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616,000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류에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직원 몇 명을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 집행

※ 몇몇 직원 또는 지인 등과 점심식사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과장 개인활동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례

■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개인적 사용

기준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업무추진비는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 ◆ ○○시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에서 친분이 있는 구의원 및 구청직원들과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14건, 177만원)
- ◆ ○○시의회 부의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간담회 명목으로 숙박비 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 ○○도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29건, 49만원)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례

■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23시) 사용

위반사례

- ◆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61건, 3,828,400원)

■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 사용

위반사례

- ◆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 2. 3.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함
- ◆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례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23시) 사용

위반사례

- ◆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61건, 3,828,400원)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 사용

위반사례

- ◆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 2. 3.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함
- ◆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례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위반사례

- ◆ ○○시의회 등 6개 의회는 각 1,000~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여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나눔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평균 17%)
- ◆ ○○도의회 부의장은 개당 19만5천원인 전복선물세트 12개(234만원)를 구매하여 동료 의원 9명과 도청 국·과장 3명에게 선물로 제공
- ◆ ○○도의회 ○○위원장은 2012. 12월. 및 2013. 4월 등 2회에 걸쳐 소속 위원 15명에게 개당 20만원인 한우선물세트를 격려품으로 제공 (총600만원)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례

■ 선심성 현금 격려 및 무분별 선물 제공

위반사례

- ◆ ○○도의회 전·현직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2011.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서실 직원들(5명)만을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총 715만원)
- ◆ ○○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 콘서트' 등 지역 언론사 주관 공연권 총 38매를 구입하여 사무처 직원에 배포 (총 365만원)
- ◆ ○○도 의장단은 '도의원 및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와인,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료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 (총 1,236만원 / 물품 수불부 미작성)
- ◆ 그 외 '화이트데이 기념 여직원 격려', '빼빼로데이 기념 직원 격려' 등 업무성과 및 노고와 무관한 선심성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 배포

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례

■ 부적절한 경조사비 집행

위반사례

- ◆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은 사무처 직원 입원 시 각 10만원~30만원씩 현금(70만원) 및 화환(20만원) 등 총 90만원을 입원 격려금으로 1인에 대해 지출
- ◆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동료 의원의 빙모상에 각각 업무추진비로 조화·경조금을 집행함으로써 총 60만원을 1인에 대해 지출
- ◆ 그 외 동료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 사망, 개인사무실 개소식, 이사 축하, 총동창회 회장취임 축하, 지인 미술전 개최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 등을 제공

4.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기준

❖ 보조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

※ 예외규정 :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인건비,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 공사·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계좌이체 가능

지적사항

◆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육성지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1천 3백만원을 간이영수증을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사용 조건을 붙이지 않음

4.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기준

❖ 보조금은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교부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필요

지적사항

◆ 축우 영농조합 법인에서 원료 생산체 개선을 위하여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사전승인 없이 원형 베일러 및 경운기 구입

4.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기준

- ❖ 보조금은 철저하게 사후 정산을 해야 함.
 - 공무원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를 해야 할 책임
 - 보조사업자 :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

지적사항

- ◆ 농촌체험마을 보조금 정산 소홀
 - 서류상으로는 150백만원 중 86백만 원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4백만원은 마을에서 직급 지급(간이 영수증 등)
 - 감사결과 : 150백만원 전액을 건설업자에게 입금한 후 건설회사 대표명의 통장(30백만원)을 이장이 받아 사업비로 집행

4.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기준

- ❖ 경상보조사업은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음
-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 전액을 반납 받아야 함.

지적사항

- ◆ 00단체에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교부 받은 영농프로그램운영(3천만원)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전문단체에 재 위탁
- ◆ 00단체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면서 이자 발생분 300만원은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횡령

4.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당부사항

-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교부 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 실시
- ❖ 교부결정시 법령, 지침에서 정한 교부조건 반드시 명시(지방계약법 적용 등)
- ❖ 보조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등)
- ❖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검토 철저(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이자 반납 등)
- ❖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 이상수